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
----------	-----

제출연월일 : 2005. 8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됨에 따라 교육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7조 제1항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80,000원으로 한다.” 를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1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함(안 제7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중 “1일에 80,000원”을 “1일에 1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u>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80,000원</u>으로 한다.</p> <p>②~③(생략)</p>	<p>제1조(목적)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p> <p>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①..... <u>110,000원</u> </p> <p>②~③(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1.1.29>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31, 2003. 7. 18>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 12. 30, 2003. 12. 18, 2005. 4. 27>

[별표 6] <개정 2005. 8. 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 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이내
사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일 100,000원 이내	